계약학과운영위원회규정 3-1-15

규정번호 3-1-15
제정일자 2016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평생교육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계약학과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3. 계약학과 정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의 구성비를 1/3이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평생교육장으로 한다.(개정 2018.08.27)

③ 위원은 부원장,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 위원을 위촉직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5조(회의개최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7조(업무관리 및 간사) 위원회의 업무는 평생교육팀에서 총괄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간사를 둔다.(개정 2018.08.27.,2024.7.24)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4호, 제3조제3항·제4항, 제4조제1항, 제7조)